

서울대 우조교 사건 담당 재판부께 드리는 탄원서

서울대조교 성희롱사건은 여성 인권의 침해, 노동권의 침해입니다

「성희롱 문제를 걱정하는 시민모임」은 지난해 10월5일, 서울대 성희롱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한편 우리사회의 성희롱 문제의 심각성을 절감하고 성희롱 추방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결성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되어온 성희롱 문제는 그 실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하나 이를 사회에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사회에서는 최초로 서울대 우조교가 사회를 향해 자신의 부당함을 호소한 것을 계기로 성희롱 문제는 본격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지난해 1심 재판에서 원고의 일부 승소 판결은 성희롱의 법률적 처벌에 대한 기초를 마련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성희롱 문제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각인시켰습니다.

그러나 1심 판결은 서울대와 국가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은 한계로 원고측에서 항소 했으며 현재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된 6차례의 2심 재판과정에서 신고 수측은 1심에서 이미 입증된 성희롱 사실조차 부정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심 과정은 항소 이유의 본래 취지가 이 과정에서 입증되기 보다는 성희롱의 사실 여부에 대해 또다시 입증하면서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저희는 이 사건이 갖는 사회적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서울대 화학과와 한 유급조교가 법률 소송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 커다란 지지와 관심을 보내는 것은 단지 우조교 개인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 대한 중요한 사회적 관심은 심각한 성희롱의 실태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직장내 성희롱의 전형적인 유형으로서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고 노동권을 침해한 사건이라는 문제의식입니다.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 우리 사회의 각계 각층에서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희롱 재판사건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과 관심이 이번 판결에 반드시 반영되어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법적인 제도마련과 더 나아가 한국여성의 권익 향상에 기여하는 판결을 내리시기를 강력히 촉구 합니다.

우리는 재판부에 아래와 같이 주장합니다.

- 재판부는 반드시 한국 여성의 인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올바르고 공정한 판결을 하여야 합니다.
- 항소심 판결에서는 반드시 성희롱을 예방하고 규제하는 고용주와 국가의 책임과 의무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1995년 2월 21일

「성희롱 문제를 걱정하는 시민 모임」 참가자 일동